

노인의 소득원 구성과 공·사 역할분담 분석

Role Sharing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s Income Sources for Elderly

석재은*

I. 서론

본 글에서는 노인의 범주적 특성별 소득원 분석을 통하여 노인소득에서의 공적역할과 사적역할 간의 역할분담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노인 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을 위한 정책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노인의 소득원 구성에 대한 관심은 몇가지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실제 노인들이 어떠한 성격(공적 혹은 사적)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공·사 역할분담의 지도를 제공해준다는 점이다. 특히, 노인의 연령계층별, 가구형태별, 소득계층별, 성별, 지역별로 노인 소득원의 구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특성 범주별로 어떤 소득대책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정책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국가별로 노인 소득원 구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에 기반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역사적으로 노인 소득원 구성의 변화경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노인 소득에 있어서의 적절한 공·사 역할분담을 설정하고,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정급여수준 등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글에서는 먼저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 나라 노인의 소득원 구성의 특수성을 살펴보았으며, 노인의 특성범주별로 소득원 구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었다. 또한 노인 소득원 구성에서 공·사 역할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노인의 소득원 유형

노인의 소득원 유형은 크게 공적 소득원과 사적 소득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소득원은 공적연금 및 생활보호 등 국가보조로 구성되며, 사적 소득원은 다시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 저축·임대·이자소득·사적연금 등에 의한 자산소득, 그리고 자녀 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 등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소득의 원천이 근로(work)를 통한 것인지(근로소득), 시장(market)을 통한 것인지(자산소득), 가족(family)을 통한 것인지(사적이전소득), 혹은 국가(state)를 통한 것인지(공적이전소득)에 따라 노인 소득원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Rainwater, Rein & Schwartz, 1986; Rein & Turner, 1999).

<표 1> 노인의 소득원 유형

소득원 유형	소득원	구성내용
근로소득	근로(work)	임금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자산소득	시장(market)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이자소득, 저축, 개인연금, 퇴직금 등
사적이전소득	가족(family)	자녀, 친척 등 비공식지지망으로부터의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국가(state)	공적연금, 경로연금, 생활보호수당 등

우리 나라의 경우,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도입역사가 짧아 현 노령계층중에는 공적연금 수급자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1999년 말 현재 공적 노령연금 수급자는 35만명으로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8%에 불과하며,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수당 및 경로연금수급자는 57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18%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공적이전소득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 노인들의 대부분은 가족 등 사적이전소득에의 의존 비중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우리 나라 노인의 공적 소득보장제도(1999. 12)

	적용대상(만명)	급여수급자(천명)	급여수준
공적연금 국민연금	18~59세 전국민 ¹⁾ (1,626)	202	20년간입기준30%
공무원연금	공무원(95)	89	20년간입기준50%
군인연금	군인(15)	51	상동
사립학교교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20)	6	상동
경로연금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저소득층 노인	573	생활보호대상자:4~5만원 저소득층: 2만원
생계보호수당	생활보호대상자	262	166,000원

주: 1) 국민연금은 특수지역연금 적용대상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한 소득활동자를 당연적용대상으로 함.

2. 노인 소득원 구성의 공·사 역할분담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노인 소득원의 공·사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 몇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노인 소득원 구성에 있어서 공·사 역할분담 실태를 분석한 연구범주이다. 미국의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1982)의 연구는 노인의 소득수준과 소득원천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연령별, 결혼상태별, 성별, 소득수준별 변이를 분석하고 있다.

둘째, 역사적으로 노인 소득원 구성에 있어서 공·사 역할분담의 변화 추이를 추적한 연구범주이다. Rein & Turner(1999)는 복지국가의 발전단계를 복지국가 출현기, 국가적 지배기, 다원화기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노인 소득원 구성에 있어서의 가족의 역할 중심기, 국가역할 강화기, 시장역할의 강화와 역할분담의 다원화기로 특징지워지는 역사적 변화를 정리하고 있다.

셋째, 국가간에 노인 소득원 구성에 있어서 공·사 역할분담이 상이한 점에 착목한 연구범주이다. 복지국가유형별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간의 역할분담을 다루었던 Esping- Andersen(1990)의 연구가 전형적인 예이다. 또한 노인 소득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었으나, Reinwater, Rein, and Schwartz(1986)은 국가간 가구의 소득원 구성에 있어서의 공·사 역할분담의 상이성을 실증적인 조사자료에 기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노인 소득원 구성의 공·사 역할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범주이다. 노인의 가족간 소득이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Cox(1987), McGarry & Scheni(1995), 손병돈(1998)의 연구가 있다.

다섯째, 노인 소득원중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간의 관계가 대체적인지 혹은 보완적인지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범주이다. Barro(1974)와 Becker(1974) 등 이타주의적 이전동기에 의하여 사

<표 3> 노인 소득원 관련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목적	변수	주요 연구결과
Cox & Jakuben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소득간 관계	-종속변수: 사적이전의 양 -독립변수: 공적이전의 양 -통제변수: 소득수준, 교육수준, 성별, 연령, 인종, 결혼상태	-사회보장이전과 사적이전의 보완관계를 주장 -미국의 AFDC가 사적이전의 양에 정의를 영향을 주고 OASDI가 사적이전의 양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대체관계를 부정.
손병돈	가족간 소득이전의 결정요인 분석	독립변수: 순이전제공량(자녀→부모) 종속변수: -경제적 변수: 경제적 계층 -수혜자의 자원변수: 부모의 재산,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자녀에게 제공한 비물질적도움,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수준 -수혜자의 욕구변수: 부모의 소득, 부모의 건강상태, 부모의 입원여부, 부모의 연령, 부모의 가구형태, 부모의 근로활동유무, 애경사유무 -제공자의 자원변수: 자녀의 소득, 자녀의 재산, -제공자의 욕구변수: 제공자의 미혼자녀수 -통제변수: 제공자의 기혼형제수, 제공자의 장남여부, 부모에 대한 증여여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연락빈도, 부모에 대한 도움시간	-경제적 변수: 유의미한 영향 -부모 자원변수 부모재산변수, 증여변수(-), 교육투자변수(+)는 유의미한 영향, 자녀에 대한 부모의 비물질적 도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부모의 욕구변수 부모의소득, 입원유무, 근로활동유무, 애경사유무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 부모의 가구형태, 연령, 일상적 건강상태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통제변수 장남여부, 부모에 대한 증여여부, 연락빈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진재문	사회보장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 대체 혹은 보완관계	-종속변수: 사적이전액, 서비스이전시간 -독립변수: 사회보장이전의 수급유무, 사회보장이전액 -통제변수: 수혜자 소득수준, 수혜자 건강상태, 수혜자 재산수준, 수혜자의 자녀에 대한 이전, 가족의식변수, 효의 기대치 및 객관적 효, 연줄망의 크기, 부모의 연령, 부모 및 자녀의 교육수준, 자녀의 경제수준, 자녀와의 거리, 수혜자의 가구형태, 성	-사회보장이전 수급유무는 사적이전액에 부의 영향을 주어 양자가 대체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사적이전시간은 일관된 관계를 보이지 않음. -사학연금수급자 및 생활보호수급자의 경우 사회보장이전액이 사적이전액과 사적시간이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문화적 변수를 통제할 경우 사적 사회보장수급유무가 사적이전액 및 사적이전시간에 미치는 부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Shi, Leiyu	중국노인과 성인자녀간의 재정적 도움과 가정적 도움의 형태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도움 형태의 차이를 연구	-종속변수: 부모와 자녀간의 도움의 양, 재정적 도움의 양 -독립변수: 건강, 수입, 교육, 사회적지지망 -통제변수: 연령, 성, 퇴직전직업거주지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여성노인의 경우 재정적 도움 증가

적이전을 분석한 연구는 대체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Cox & Jakubson(1995)는 교환이론의 맥락에서 사회보장이전과 사적이전의 보완관계를 주장하고 있다(진재문, 1999). 또한 진재문(1999)는 사학연금수급자와 생활보호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타주의적 대체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노인의 소득원 구성에서의 공·사 역할분담의 결정요인 및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수혜자(노인)와 제공자(자녀)의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손병돈, 1998; 진재문, 1999), 수혜자 중심의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Cox, 1997), 제공자 중심의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McGarry & Scheni, 1995)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결과에서 노인 소득원 구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설명변수는 노인의 연령, 자녀동거여부, 소득수준, 성별, 지역, 건강상태, 교육수준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Ⅲ. 노인 소득원 구성의 공·사 역할분담 국제비교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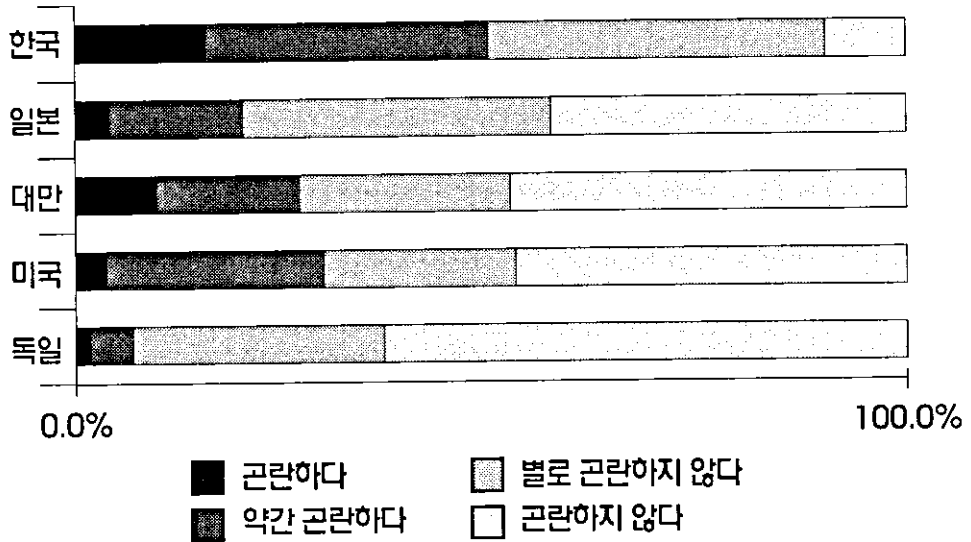
노인의 주관적 생활곤란감에 대한 조사결과, 한국의 경우 곤란하다 15.8%, 약간 곤란하다 32.8%로 무려 48.6%가 노후의 경제적 생활이 곤란하다고 답변하고 있어 조사대상 5개국중 가장 노후의 경제적 생활곤란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일은 곤란하다 및 약간 곤란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총 8.1%에 그치고 있으며, 곤란하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이 절반을 훨씬 넘는 63%에 이르고 있어 가장 풍족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노인의 생활비 조달방안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근로활동기에 저축 등을 통하여 스스로 노후생활에 대비하겠다는 자립형은 미국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에 의존하겠다는 가족의존형은 대만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보장을 통하여 노후생활비를 조달하겠다는 사회보장의존형은 독일이 압도적으로 높은 59.3%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1980년과 1995년의 조사결과가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각국가에 걸쳐서 나타나는 주요한 변화추이는 가족의존형은 감소하는 반면, 사회보장의존형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80년 조사당시에는 노후 생활비 조달을 가족에 의존하겠다는 가족의존형이 가장 높은 49.4%를 보였으나, 1995년 조사당시에는 동비율이 28.2%로 대폭

3) 국제비교는 일본 총무청장관관방고령사회대책실 주관으로 1980년부터 매 5년마다 주요국의 노인생활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는 1995년으로, 일본, 한국, 대만, 미국, 독일 등 5개국의 60세 이상 노인 1000명씩을 대상으로 동일설문지로 조사한 결과이다.

감소하는 대신 사회보장을 통하여 노후생활비를 조달하겠다는 사회보장의존형이 1980년의 8.2%에서 1995년에는 29.2%로 대폭 높게 나타나는 등 노인의식의 급격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노인(60세이상)의 생활곤란인식 국제비교(1995)



자료: 일본 총무청장관방고령사회대책실,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제4회 국제비교 조사결과 보고서, 1997, 중앙법규.

<표 4> 노후 생활비 조달 의식의 국제적 추이비교(1980~1995)

소득원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90	1995
자립형(근로기에 준비)	40.3	41.9	55.0	46.6	24.7	41.2	60.7	62.1	45.2	32.2
가족의존형	49.4	28.2	18.8	12.8	61.4	41.9	0.6	0.8	6.0	3.8
사회보장의존형	8.2	29.2	21.8	37.7	10.6	16.1	29.1	25.7	45.6	59.3

자료: 일본 총무청장관방고령사회대책실,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제4회 국제비교 조사결과 보고서, 1997, 중앙법규.

한편, 실제로 노인의 주소득원의 구성이 각 국가에서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대만은 자녀 등에 의한 사적이전소득을 주소득원이라고 답한 노인이 각각

56.6%,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형적인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국가군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반면, 독일을 비롯하여 일본과 미국은 공적연금에 의한 공적소득이전이 주요한 소득원이라고 대답한 노인이 각각 77.6%, 57.4%,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는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사적연금을 주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10.1%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타 복지영역에서도 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군으로 분류되는 미국이 노후소득보장에서도 기업 등 사적시장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을 노후의 주소득원으로 답한 노인이 한국, 일본, 대만에서는 비교적 높은 22~27%로 나타난 반면, 미국은 15.5%, 독일은 훨씬 낮은 4.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노인(60세이상)의 주소득원 국제비교(1995)

소득원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근로소득		26.6	21.6	26.9	15.5	4.6
자산소득	소계	9.9	6.6	8.8	23.3	13.7
	재산소득	4.5	2.5	4.8	8.5	2.0
	예금인출	4.9	2.4	1.9	1.5	1.6
	사적연금	0.5	1.7	2.1	13.3	10.1
사적이전	소계	56.6	6.6	56.5	1.6	1.9
	자녀지원	56.3	4.2	52.9	0.0	0.2
	기타	0.3	2.4	3.6	1.6	1.7
공적이전	소계	6.6	57.4	7.6	55.8	77.6
	공적연금	2.9	57.1	7.3	55.5	77.0
	생활보호	3.7	0.3	0.3	0.3	0.6

자료 : 일본 총무청장관관방고령사회대책실,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제4회 국제비교 조사결과 보고서, 1997, 중앙법규.

한편, 노인의 주소득원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각국가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자녀 등에 의한 사적이전소득이 주소득원인 경우는 감소하고, 공적이전소득이 주소득원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80년 조사당시 사적이전이 주소득원인 경우가 75.6%에 달하였으나, 1995년 조사에서는 56.6%로 약 20%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서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을 주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6.6%로 여전히 절대비중은 낮으나 1980년의 2.0%에 비하면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노후 생활비 조달방안에 대한 의식의 변화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 현상으로, 실제 노인의 경제적 부양의 책임이 가족으로

부터 사회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표 6> 참조).

한편, 성별 주소득원을 비교하면, 각국이 공통적으로 근로소득은 남성이, 사적이전소득은 여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경우도 대만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주소득원으로 지목한 경우가 더 많았다(<표 7> 참조).

또한, 연령계층별 주소득원을 비교해보면, 각국가에 걸쳐 공통적으로 명확하게 관찰되는 현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소득원으로서의 근로소득 비중은 현저히 감소한다는 점이다. 또한 자녀들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부양에 있어서의 가족의존도가 낮은 독일이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적이전소득에의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점이 관찰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60~64세 연령층에서는 26.8%에서, 80세 이상 연령층이 되면 77.7%로 증가하고, 대만의 경우에도 60~64세 연령층에서는 35.1%에서 80세 이상 연령층이 되면 79.8%로 증가하며, 일본의 경우에는 그 절대적 비중은 크게 높지 않지만 60~64세 연령층에서는 2.1%에서 80세 이상 연령층이 되면 7.2%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공적연금 도입역사가 오래되어 연금수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적이전소득에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적연금 제도의 도입역사가 짧아 공적연금 수급자나 그 급여수준이 미미한 한국이나 대만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의존도가 연령에 따라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표 8> 참조).

<표 6> 노인(60세이상)의 주소득원 국제적 추이 비교(1980~1995)

소득원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근로소득	16.2	26.6	31.3	21.6	29.9	26.9	15.2	15.5
자산소득								
소계	5.5	9.9	11.2	6.6	6.7	8.8	26.2	23.3
재산소득	3.3	4.5	5.3	2.5	3.8	4.8	14.5	8.5
예금인출	2.2	4.9	2.1	2.4	1.7	1.9	1.7	1.5
사적연금	0.0	0.5	3.8	1.7	0.2	2.1	10.0	13.3
사적이전								
소계	75.6	56.6	18.7	6.6	61.6	56.5	3.8	1.6
자녀지원	72.4	56.3	15.6	4.2	58.2	52.9	0.3	0.0
기타	3.2	0.3	3.1	2.4	3.4	3.6	3.5	1.6
공적이전								
소계	2.0	6.6	36.1	57.4	2.3	7.6	54.6	55.8
공적연금	0.8	2.9	34.9	57.1	2.2	7.3	53.9	55.5
생활보호	1.2	3.7	1.2	0.3	0.1	0.3	0.7	0.3

자료 : 일본 총무청장관방고령사회대책실,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제4회 국제비교 조사결과 보고서, 1997, 중앙법규.

<표 7> 노인(60세이상)의 성별 주소득원 국제적 비교

소득원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근로소득		38.5	17.5	28.2	16.1	31.6	22.5	17.7	13.9	6.3	3.5
자산소득	소계	16.1	5.2	6.0	7.1	7.8	9.8	28.6	19.5	15.0	12.9
	재산소득	7.1	2.5	2.6	2.5	3.4	6.0	9.6	7.7	2.1	1.9
	예금인출	8.3	2.3	1.5	3.1	2.4	1.5	2.2	1.0	1.3	1.8
	사적연금	0.7	0.4	1.9	1.5	2.0	2.3	16.8	10.8	11.6	9.2
사적이전		40.1	68.6	1.9	6.1	45.0	60.4	0.0	0.0	0.0	0.3
공적이전	소계	4.6	8.1	54.5	59.8	12.8	2.7	50.1	59.9	74.7	79.4
	공적연금	2.5	3.2	54.3	59.3	12.6	2.3	50.1	59.4	73.9	78.9
	생활보호	2.1	4.9	0.2	0.5	0.2	0.4	0.0	0.5	0.8	0.5

자료 : 일본 총무청장관관방고령사회대책실,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제4회 국제비교 조사결과 보고서, 1997, 중앙법규.

<표 8> 노인(60세이상)의 연령계층별 주소득원 국제비교(1995)

국가	소득원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한국	근로소득	57.4	30.7	19.8	13.4	5.0	
	자산소득	10.5	8.6	11.5	7.7	10.8	
		재산소득	2.6	5.3	6.9	3.7	1.7
		예금인출	6.8	2.5	4.6	3.7	9.1
		사적연금	1.1	0.8	0.0	0.5	0.0
	사적이전	26.8	51.6	63.4	68.4	77.7	
	공적이전	5.3	7.8	4.6	9.6	5.8	
		공적연금	3.2	3.7	1.9	3.2	2.5
		생활보호	2.1	4.1	2.7	6.4	3.3
	일본	근로소득	37.8	20.4	15.3	8.3	5.3
자산소득		5.6	5.8	5.9	7.0	11.2	
		재산소득	2.4	2.4	1.5	3.2	3.9
		예금인출	1.9	1.7	3.4	1.9	3.9
		사적연금	1.3	1.7	1.0	1.9	3.3
사적이전		2.1	3.4	3.9	8.3	7.2	
공적이전		41.3	61.6	67.0	69.2	65.8	
		공적연금	41.0	61.6	67.0	68.6	63.2
		생활보호	0.3	0.0	0.0	0.6	2.6

국가	소득원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대만	근로소득		44.0	26.6	15.8	9.1	5.1
	자산소득	소계	8.9	11.4	6.9	6.3	8.1
		재산소득	4.3	5.7	3.7	4.5	6.1
		예금인출	2.4	1.5	2.1	1.8	1.0
		사적연금	2.2	4.2	1.1	0.0	1.0
	사적이전		35.1	47.9	68.9	72.7	79.8
	공적이전	소계	6.8	11.4	4.7	10.0	3.0
		공적연금	6.8	10.6	4.7	10.0	2.0
		생활보호	0.0	0.8	0.0	0.0	1.0
	미국	근로소득		36.8	14.3	11.4	2.9
자산소득		소계	20.1	24.5	25.0	27.1	20.1
		재산소득	6.1	8.6	6.8	14.3	9.4
		예금인출	0.4	1.6	1.3	0.7	4.0
		사적연금	13.6	14.3	16.9	12.1	6.7
사적이전			0.0	0.0	0.0	0.0	0.0
공적이전		소계	39.5	54.9	57.8	66.4	69.2
		공적연금	38.6	54.9	57.8	66.4	68.5
		생활보호	0.9	0.0	0.0	0.0	0.7
독일		근로소득		12.9	1.7	0.5	1.6
	자산소득	소계	13.0	14.4	13.6	12.0	15.2
		재산소득	2.4	1.3	0.5	2.4	3.8
		예금인출	2.4	0.4	1.5	0.8	2.7
		사적연금	8.2	12.7	11.6	8.8	8.7
	사적이전		8.2	12.7	11.6	8.8	8.7
	공적이전	소계	68.3	80.1	82.4	81.6	79.3
		공적연금	66.7	79.7	81.9	81.6	79.3
		생활보호	1.6	0.4	0.5	0.0	0.0

자료 : 일본 총무청장관관방고령사회대책실,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제4회 국제비교 조사결과 보고서, 1997, 중앙법규.

IV. 노인 소득원 구성의 공·사 역할분담 실태분석4)

1. 노인의 소득수준

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40만원 미만이 31.6%, 40~80만원 이하가 26.2%, 80~150만원이 23.3%, 150~250이 13.8%, 250만원 이상이 5.1%으로 나타났다.

<표 9> 노인가구의 소득수준 분포(n=2,197)

전체	40만원미만	40~80 만원미만	80~150 만원미만	150~250 만원미만	250 만원이상
100.0	31.6	26.2	23.3	13.8	5.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8.

또한 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좋다 혹은 약간 좋다고 응답한 경우는 11.2%에 불과한 반면, 약간 나쁘다 혹은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는 49.9%로 절반에 이르고 있다.

<표 10> 노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n=2,219)

전체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보통 이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100.0	1.7	9.5	38.9	28.4	21.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8.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의 과반수 이상 노인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 노령계층이 가족부양체계에서 공적부양체계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충분한 가족부양도, 충분한 공적부양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4) 노인 소득원 구성의 공·사 역할분담 실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8년도에 전국적으로 노인생활실태를 조사한 원자료를 재분석한 것이다.

2. 노인의 소득원 구성의 공·사 역할분담

노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원에 대하여 복수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90.0%가 자녀 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을 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원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공적연금 및 생활보호 등 공적이전소득을 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의 미미함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을 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6%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외 근로소득은 전체 응답자의 32.3%가, 자산소득은 전체 응답자의 20.3%가 각각 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한편, 우리 나라 전체 노인의 평균소득은 약 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평균근로소득이

<표 11> 우리 나라 노인(65세이상)의 소득원 구성(1998)

(단위: %, 만원)

소득원	소득원 비율 ¹⁾	평균소득액 ²⁾	평균소득액 ³⁾	소득액 비중 ⁴⁾	
전체소득	100.0	42.0	40.1	100.0	
근로소득	32.2	38.7	12.4	30.9	
자산소득	20.3	50.8	8.2	20.4	
	부동산수입	11.1	40.0	4.5	11.2
	금융수입	5.7	52.7	3.0	7.5
	퇴직금	0.8	135.0	2.6	6.5
	개인연금	0.2	43.8	0.7	1.7
사적이전	90.0	20.4	15.4	38.4	
	비동거자녀보조	65.0	18.1	11.8	29.4
	동거자녀보조	23.2	14.6	3.4	8.5
	친척보조	1.1	9.1	0.1	0.2
	단체보조	0.6	16.1	0.1	0.2
공적이전	10.9	37.1	4.0	10.0	
	공적연금	2.6	98.7	2.6	6.5
	국가보조	8.3	17.6	1.5	3.7

주: 1) 전체 조사대상에 대한 복수응답 비율임(전체대상: 2372case)

2) 평균소득액=해당소득을 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평균소득액(0원 제외)

3) 평균소득액=조사대상 모든 사람의 평균소득액(0원 포함)

4) 소득액 비중=해당 소득원의 평균소득액 / 전체 평균소득액 ×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1998.

124만원으로 30.9%, 평균자산소득이 8.2만원으로 20.4%, 평균사적이전소득이 15.4만원으로 38.4%, 평균공적이전소득이 4.0만원으로 10.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 소득중 소득원별 비중은 근로(work): 시장(market): 가족(family): 국가(state)의 역할은 3: 2: 4: 1의 비중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를 다시 공·사로 이분하여 정리하여 보면, 노인 스스로 근로를 통하여, 혹은 근로시에 저축한 자산소득을 통하여, 혹은 자녀로부터의 이전소득을 통하여 사적으로 조달한 비중이 전체 노인소득중 90%에 달하는 반면, 공적소득의 비중은 10%로 미미한 역할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해당 소득을 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 소득원의 평균소득액을 살펴보면, 자산소득이 50.8만원으로 가장 높고, 근로소득이 38.7만원, 공적이전소득이 37.1만원, 사적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20.4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주로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의 평균액은 98.7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에 경제적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가구유형별 노인의 소득원 구성

가구유형별로 노인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평균소득액은 자녀동거가구가 34.4만원, 노인부부가

<표 12> 우리 나라 노인(65세이상)의 가구유형별 소득원 구성(1998)

		(단위: 만원, %)			
소득원		자녀동거가구 (n=1153)	노인부부가구 (n=663)	노인독신가구 (n=425)	기타노인가구 (n=131)
전체소득		34.4 (100.0)	56.3 (100.0)	31.1 (100.0)	37.3 (100.0)
근로소득		8.1 (23.5)	21.8 (38.7)	10.6 (34.1)	9.1 (24.4)
자산소득	소계	7.4 (21.5)	12.8 (22.7)	4.0 (12.9)	6.9 (18.5)
	부동산수입	3.9	6.6	3.0	3.5
	금융수입	2.7	4.8	1.0	3.4
	퇴직금	0.5	1.4	0.0	0.0
	개인연금	0.2	0.0	0.03	0.0
사적이전	소계	16.3 (47.4)	15.5 (27.5)	12.1 (38.9)	17.3 (46.4)
	비동거자녀보조	9.3	15.1	11.7	16.5
	동거자녀보조	6.9	0.0	0.0	0.6
	친척보조	0.02	0.1	0.4	0.1
	단체보조	0.02	0.3	0.07	0.06
공적이전	소계	2.6 (7.6)	6.3 (11.2)	4.3 (13.8)	4.0 (10.7)
	공적연금	1.9	5.1	0.6	2.1
	국가보조	0.7	1.2	3.7	1.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1998.

구가 55.3만원, 노인독신가구가 31.1만원, 기타노인가구가 37.3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녀동거가구인 경우, 근로소득 비중이 자녀비동거가구보다 낮은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지만,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동거비율이 높고, 높은 연령까지 근로를 계속하는 농어촌지역에 자녀비동거 노인가구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전체 소득중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연령계층별 노인의 소득원 구성

연령계층별 노인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액의 절대수준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65~69세 연령층의 평균소득액은 53.8만원, 70~74세 연령층은 40.0만원, 75~79세 연령층은 27.8만원, 80세 이상 연령층은 19.7만원으로 연령과 정비례하여 소득의 절대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우리 나라 노인(65세이상)의 연령계층별 소득원 구성(1998)

(단위: 만원, %)

소득원		65~69세 (n=903)	70~74세 (n=693)	75~79세 (n=428)	80세 이상 (n=348)
전체소득		53.8 (100.0)	40.0 (100.0)	27.8 (100.0)	19.7 (100.0)
근로소득		21.0 (39.0)	11.0 (27.5)	5.0 (18.0)	2.3 (11.7)
자산소득	소계	10.1 (18.8)	7.2 (18.0)	8.4 (30.2)	5.4 (27.4)
	부동산수입	5.4	4.0	4.3	3.1
	금융수입	3.6	2.0	4.1	2.4
	퇴직금	1.1	0.8	0.0	0.0
	개인연금	0.02	0.3	0.0	0.0
사적이전	소계	16.9 (31.4)	17.4 (43.5)	13.3 (47.8)	10.0 (50.8)
	비동거자녀보조	12.3	13.5	10.8	8.2
	동거자녀보조	4.3	3.7	2.4	1.7
	친척보조	0.2	0.1	0.04	0.1
	단체보조	0.1	0.1	0.03	0.04
공적이전	소계	5.8 (10.8)	4.5 (11.3)	1.1 (4.0)	2.0 (10.2)
	공적연금	4.4	3.1	0.1	0.0
	국가보조	1.5	1.4	1.0	2.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1998.

이와 같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액이 감소하는 현상은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각각의 소득원별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능력이 상실되므로 소득액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경우에도 공적연금의 미성숙으로 오히려 낮은 연령계층인 65~69세 연령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75세 이상의 고연령 노령계층은 공적연금의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적이전소득의 경우에는 절대액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체 소득중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오히려 증가하여 80세 이상 연령계층이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은 50.8%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득계층별 노인의 소득원 구성

소득계층별 노인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가구의 소득계층별로 노인의 소득수준도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장 낮은 소득계층인 소득1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액은 13.4만원, 소득2분위계층은 27.7만원, 소득3분위계층은 43.8만원, 소득4분위계층은 47.7만원, 가장 소득이 높은 소득5분위계층은 57.2만원으로, 가구의 소득계층에 비례하여 노인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수준의 차이는 소득원중 자산소득에서 가장 크게 차이를 보였다. 소득1분위계층은 0.8만원인데 비하여 소득5분위계층은 21만원이며, 그 비중도 36.7%에 달하고 있다. 한편 사적이전의 경우 절대액은 소득3분위계층이 19.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그 비중에 있어서는 소득2분위계층이 가장 높은 54.4%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계층은 노인도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적이전을 할 필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절대액 및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며, 가장 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의 경우에는 노인의 욕구는 크지만 그 가족역시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여력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비교적 가족의 소득수준이 팬찮은 소득3분위계층의 사적이전액이 가장 높고, 그 의존도는 소득2분위계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진다. 공적이전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는 소득5분위계층이 9.7만원으로 그 절대액이 가장 높았으나, 그 비중에 있어서는 소득1분위계층인 저소득층이 23.9%로 가장 높은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14> 우리 나라 노인(65세이상)의 소득계층별 소득원 구성(1998)

(단위: 만원, %)

소득원		소득1분위 (n=306)	소득2분위 (n=421)	소득3분위 (n=608)	소득4분위 (n=553)	소득5분위 (n=453)
전체소득		13.4 (100.0)	27.7 (100.0)	43.8 (100.0)	47.7 (100.0)	57.2 (100.0)
근로소득		3.8 (28.4)	8.6 (31.0)	17.5 (40.0)	15.9 (33.3)	11.5 (20.1)
자산소득	소계	0.8 (6.0)	2.6 (9.4)	5.1 (11.7)	10.2 (21.4)	21.0 (36.7)
	부동산수입	0.7	2.1	3.6	5.2	9.7
	금융수입	0.07	0.5	0.9	3.7	9.6
	퇴직금	0.0	0.03	0.6	1.2	1.2
	개인연금	0.0	0.0	0.02	0.0	0.5
사적이전	소계	5.6 (41.8)	15.1 (54.4)	19.2 (43.8)	17.6 (36.9)	14.9 (26.1)
	비동거자녀보조	5.2	14.6	16.6	11.3	9.1
	동거자녀보조	0.1	0.4	2.5	5.6	6.5
	친척보조	0.3	0.1	0.1	0.02	0.03
	단체보조	0.1	0.03	0.04	0.3	0.0
공적이전	소계	3.2 (23.9)	1.5 (5.4)	2.0 (4.6)	4.1 (8.6)	9.7 (17.0)
	공적연금	3.2	1.5	0.5	3.0	9.1
	국가보조	3.2	1.5	1.5	1.2	0.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1998.

4) 성별 노인의 소득원 구성

성별 노인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남성은 58.7만원, 여성은 29.2만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은 절대 소득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원별로도 그 절대액은 모두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남성은 23만원, 여성은 6.3만원으로 4배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자산소득도 각각 12.4만원과 5.8만원으로 2배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공적이전소득도 각각 6.1만원, 2.8만원으로 2.5배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사적이전소득의 경우에는 남성이 17.3만원, 여성이 14.3만원으로 비교적 차이가 적었다. 한편, 소득원별 비중에 있어서, 남성은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39.2%의 비중을 보인 반면, 여성은 사적이전소득이 가장 높은 49.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우리 나라 노인(65세이상)의 성별 소득원 구성(1998)

(단위: 만원, %)

소득원		남성 (n=874)	여성 (n=1498)
전체소득		58.7 (100.0)	29.2 (100.0)
근로소득		23.0 (39.2)	6.3 (21.6)
자산소득	소계	12.4 (21.1)	5.8 (20.0)
	부동산수입	6.3	3.4
	금융수입	4.8	2.0
	퇴직금	1.3	0.3
	개인연금	0.02	0.2
사적이전	소계	17.3 (29.5)	14.3 (49.0)
	비동거자녀보조	13.3	10.9
	동거자녀보조	3.6	3.3
	친척보조	0.1	0.1
	단체보조	0.2	0.03
공적이전	소계	6.1 (10.4)	2.8 (9.6)
	공적연금	4.8	1.3
	국가보조	1.4	1.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1998.

5) 지역별 노인의 소득원 구성

지역별 노인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대도시가 45.9만원, 중소도시가 42.6만원, 농어촌이 32.9만원으로 도시일수록 그 노인소득수준의 절대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원별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농어촌이 그 절대액과 비중이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의 노인이 대부분 정년이 있는 임금근로자인데 반하여 농어촌의 경우 정년이 없는 자영업이므로 계속 근로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자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다른 소득원의 경우에는 도시가 농어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우리 나라 노인(65세이상)의 지역별 소득원 구성(1998)

(단위: 만원, %)

소득원		대도시 (n=960)	중소도시 (n=547)	농어촌 (n=865)
전체소득		45.9 (100.0)	42.6 (100.0)	32.9 (100.0)
근로소득		11.9 (25.9)	7.4 (17.3)	16.2 (49.2)
자산소득	소계	9.4 (20.5)	12.7 (29.8)	4.1 (12.5)
	부동산수입	5.3	6.7	2.1
	금융수입	2.7	5.9	1.7
	퇴직금	1.2	0.1	0.4
	개인연금	0.2	0.0	0.0
사적이전	소계	18.2 (39.7)	17.8 (41.8)	10.6 (32.2)
	비동거자녀보조	13.4	14.0	8.3
	동거자녀보조	4.3	3.5	2.3
	친척보조	0.2	0.1	0.02
	단체보조	0.04	0.3	0.04
공적이전	소계	5.6 (12.2)	4.7 (11.0)	1.9 (5.8)
	공적연금	1.2	2.8	1.9
	국가보조	1.3	1.8	1.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1998.

V. 노인 소득원 구성의 공·사 역할분담 결정요인 분석

1. 연구가설

본 장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노인 공·사 소득원별로 결정요인을 회귀분석하였으며,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간의 관계가 대체적 혹은 보완적 특성을 가지는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노인 근로소득의 결정요인

- 노인의 근로소득 수준은 노인 근로능력의 측면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며, 노인 자원의 측면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한 경우일수록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또한 육구의 측면에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회의 측면에서 정년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각각 근로소득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 노인 자산소득의 결정요인

- 노인의 자산소득 수준은 노인의 자원의 측면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한 경우일수록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그러나 연령, 자녀 동거여부, 건강상태, 지역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연구가설 3: 노인 사적이전소득의 결정요인

- 노인의 사적이전소득 수준은 노인의 욕구측면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여성일수록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며, 가족의 자원측면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그러나 건강상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전문직 종사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연구가설 4: 노인 공적이전소득의 결정요인

- 노인의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과 공공부조 수급자 집단에 따라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상이할 것이다. 공적연금의 경우 노인의 자원측면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전문직에 종사한 경우에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공공부조의 경우 노인의 욕구측면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인 경우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동거여부, 건강상태, 지역,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연구가설 5: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간의 관계

- 노인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간에는 대체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즉, 노인의 사적이전소득 수준은 공적이전소득이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역도 성립한다.
 - 노인의 공적연금소득이 낮을수록 사적이전소득이 높아질 것이다.
 - 노인의 공공부조소득이 낮을수록 사적이전소득이 높아질 것이다.

노인의 소득원별 결정요인 분석과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간 관계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과 기술통계치는 <표 17>과 같다.

<표 17> 변수설명 및 기술통계

	변수명	변수설명	평균(n=2372)	표준편차
종속변수	근로소득	근로소득(고용, 자영) (단위: 만원)	12.44	29.19
	자산소득	부동산수입 + 금융수입(저축·이자·증권배당) + 퇴직금 + 개인연금 (단위: 만원)	8.24	36.10
	사적이전소득	자녀이전소득(동거자녀·비동거자녀) + 친척보조 + 단체보조 (단위: 만원)	15.36	21.86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 국가보조 (단위: 만원)	4.02	20.13
독립변수	연령	노인의 연령	72.58	6.18
	자녀동거여부	비동거=0, 동거=1 더미변수	0.49	0.5
	건강상태	매우좋다=1, 좋은편이다=2, 보통이다=3, 약간나쁘다=4, 아주 나쁘다=5	3.85	1.72
	소득수준	노인소속가구의 소득수준	40.06	52.49
	지역	도시=0, 농어촌=1 더미변수	0.36	0.48
	성별	남=0 여=1 더미변수	0.63	0.48
	교육수준	글자모름=1, 글자해독=2, 초등학교=3, 중학교=4, 고등학교=5, 전문대학=6, 대학교=7, 대학원이상=8	2.54	1.48
	전문직 종사여부	최장종사직업 전문직=0, 비전문직=1	0.92	0.28

변수간 단순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원간에는 근로소득은 자산소득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사적이전소득 및 공적이전소득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소득은 사적이전소득과는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적이전소득은 공적이전소득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소득과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 자녀동거여부, 건강상태, 성별, 전문직종사여부의 경우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소득수준, 지역, 교육수준의 경우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과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 건강상태, 지역, 성별, 전문직종사여부의 경우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소득수준과 교육수준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자녀동거여부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과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 건강상태, 지역, 성별, 전문직종사여부 경우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자녀동거여부, 소득수준, 교육수준의 경우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과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 자녀동거여부, 건강상태, 지역, 성별, 전문직종사여부의 경우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소득수준, 교육수준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표 18> 변수간 상관관계분석

	근로 소득	자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	연령	자녀 동거 여부	건강 상태	소득 수준	지역	성별	교육 수준	전문직 종사 여부
근로소득	1.000											
자산소득	0.040**	1.000										
사적이전소득	-0.147*	-0.042**	1.000									
공적이전소득	-0.036**	0.003	-0.087*	1.000								
연령	-0.239*	-0.046**	-0.122*	-0.079*	1.000							
자녀동거여부	-0.144*	-0.024	0.040**	-0.069*	0.140*	1.000						
건강상태	-0.159*	-0.088*	-0.082*	-0.063*	0.219*	0.075*	1.000					
소득수준	0.509*	0.694*	0.273*	0.329*	-0.245*	-0.106*	-0.207*	1.000				
지역	0.097*	-0.086*	-0.164*	-0.079*	0.046**	-0.102*	0.045**	-0.104*	1.000			
성별	-0.276*	-0.087*	-0.066*	-0.080*	0.087*	0.119*	0.160*	-0.272*	-0.036**	1.000		
교육수준	0.248*	0.200*	0.196*	0.204*	-0.277*	-0.115*	-0.269*	0.435*	-0.212*	-0.445*	1.000	
전문직종사여부	-0.150*	-0.164*	-0.129*	-0.254*	0.045**	0.076*	0.169*	-0.347*	0.122*	0.288*	-0.545*	1.000

주: * p< 0.001, **p< 0.05

2. 노인의 소득원별 결정요인 분석

노인의 소득원별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수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자녀동거여부, 소득수준, 지역, 성별, 전문직종사여부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와 교육수준은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근로소득 수준은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남성일수록, 비전문직에 종사한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근로소득에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이기 때문에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고, 연구가설과 달리 비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노인근로인구의 상당수가 농어촌지역에서 농사일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산소득의 수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소득수준, 성별, 교육수준, 전문직종사여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동거여부, 건강상태, 지역은 자산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자산소득 수준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을 제외하고는 연구가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특히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산소득이 높은 것은 의외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사적이전소득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자녀동거여부, 소득수준, 지역, 교육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 성별, 전문직종사여부는 사적이전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사적이전소득 수준은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와 동거를 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연구가설과 비교하여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의 활동반경이 넓고 욕구가 크다는 점에서 사적이전소득이 크다는 점은 일치하고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아 노인을 지원할 여력이 있는 경우에 사적이전소득액이 더 커진다는 점도 부담능력의 차원에서 일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 사적이전소득액이 더 크다는 것, 노인의 거주지역과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다는 점은 가설과 상이한 부분이다.

공적이전소득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수준, 성별, 전문직종사여부이며, 연령, 자녀동거여부, 건강상태, 지역, 교육수준은 공적이전소득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공적이전소득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인 경우, 전문직에 종사한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소득계층이 주수급자인 공적연금과 저소득계층이 주수급자인 국가보조라는 상이한 성격의 급여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이전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당수가 모순된 결과들 속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한 경우는 공적연금 수급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며, 여성인 경우는 공공부조 수급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표 19> 참조).

<표 19> 노인의 소득원별 결정요인 분석

		β	SE	t	
근로소득	(상수)	49.678*	7.861	6.320	R2 =0.318 D-W=1.535
	연령	-0.516*	0.087	-5.926	
	자녀동거여부	-2.966**	1.017	-2.917	
	건강상태	-0.473	0.304	-1.552	
	소득수준	0.259*	0.011	23.882	
	지역	8.146*	1.074	7.582	
	성별	-8.512*	1.173	-7.260	
	교육수준	-0.014	0.044	-0.319	
	전문직종사여부	4.775***	2.180	2.190	
자산소득	(상수)	-79.204*	8.202	-9.657	R2 =0.515 D-W=1.346
	연령	0.704*	0.091	7.758	
	자녀동거여부	1.526	1.061	1.438	
	건강상태	0.310	0.318	0.976	
	소득수준	0.540*	0.011	47.700	
	지역	-1.659	1.121	-1.480	
	성별	5.562*	1.223	4.546	
	교육수준	-0.096***	0.046	-2.080	
	전문직종사여부	7.473*	2.275	3.285	
사적이전소득	(상수)	21.259**	6.750	3.149	R2 =0.103 D-W=1.347
	연령	-0.177***	0.075	-2.366	
	자녀동거여부	2.878*	0.873	3.296	
	건강상태	-0.095	0.261	-0.363	
	소득수준	0.095*	0.009	10.166	
	지역	-5.176*	0.923	-5.610	
	성별	1.036	1.007	1.029	
	교육수준	0.099**	0.038	2.635	
	전문직종사여부	-0.388	1.872	-0.207	
공적이전소득	(상수)	8.226	6.106	1.354	R2 =0.135 D-W=1.176
	연령	-0.019	0.068	-0.176	
	자녀동거여부	-1.438	0.790	-1.820	
	건강상태	0.257	0.236	1.088	
	소득수준	0.107*	0.008	12.663	
	지역	-1.311	0.835	-1.571	
	성별	1.914***	0.911	2.102	
	교육수준	0.010	0.034	0.292	
	전문직종사여부	-11.859*	1.694	-7.002	

주: * p <0.001, ** p <0.01, *** p <0.05

3. 노인의 사적이전소득 및 공적이전소득간 관계 분석: 대체 혹은 보완관계

<표 20> 노인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관계

		β	SE	t	
종속변수: 사적이전소득	(상수)	23.178*	6.604	3.510	R2 =0.143 D-W=1.365
	공적이전소득	-0.232*	0.022	-10.438	
	연령	-0.180***	0.073	-2.457	
	자녀동거여부	2.544**	0.855	2.977	
	건강상태	-0.035	0.256	-0.137	
	소득수준	0.119*	0.009	12.691	
	지역	-5.480*	0.903	-6.071	
	성별	1.480	0.986	1.502	
	교육수준	0.102**	0.037	2.757	
전문직종사여부	-3.141	1.850	-1.698		
종속변수: 사적이전소득	(상수)	23.385*	6.646	3.519	R2 =0.132 D-W=1.366
	공적연금소득	-0.212*	0.024	-8.897	
	연령	-0.189**	0.074	-2.569	
	자녀동거여부	2.892*	0.859	3.366	
	건강상태	-0.052	0.257	-0.203	
	소득수준	0.115*	0.009	12.160	
	지역	-5.368*	0.908	-5.912	
	성별	1.414	0.992	1.426	
	교육수준	0.107**	0.037	2.863	
전문직종사여부	-3.016	1.865	-1.617		
종속변수: 사적이전소득	(상수)	20.736**	6.715	3.088	R2 =0.113 D-W=1.346
	국가보조소득	-0.299*	0.058	-5.156	
	연령	-0.163***	0.074	-2.195	
	자녀동거여부	2.427**	0.873	2.781	
	건강상태	-0.078	0.260	-0.300	
	소득수준	0.098*	0.009	10.582	
	지역	-5.298*	0.918	-5.771	
	성별	1.076	1.002	1.074	
	교육수준	0.093***	0.038	2.468	
전문직종사여부	-0.233	1.862	-0.125		
종속변수: 공적이전소득	(상수)	12.305***	5.984	2.056	R2 =0.173 D-W=1.194
	사적이전소득	-0.190*	0.018	-10.438	
	연령	-0.045	0.066	-0.687	
	자녀동거여부	-0.891	0.774	-1.151	
	건강상태	0.239	0.231	1.035	
	소득수준	0.125*	0.008	14.812	
	지역	-2.294**	0.822	-2.792	
	성별	2.111***	0.891	2.370	
	교육수준	0.029	0.034	0.863	
전문직종사여부	-11.933*	1.656	-7.205		

주: * p <0.001, ** p <0.01, *** p <0.05

노인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간에는 대체관계가 있는지 혹은 보완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적이전소득을 종속변수, 공적이전소득을 독립변수로 하고, 연령 등 8개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하였다. 또한 그 역으로도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공적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변인으로, 사적이전소득 수준은 공적이전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적이전소득을 공적연금과 국가보조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여 보았을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따라서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간에는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우리 나라와 같이 공적소득이전이 미미한 국가에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적이전소득이 주요한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표 20> 참조).

VI. 결 론

본 연구에서 다룬 노인 소득원 구성에서의 공·사 역할분담에 대한 분석은 노인 특성범주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역사적으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공·사 역할분담형태와 그 결정 메카니즘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적정 노령소득보장체계를 설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상대적인 비중에 지나지 않는 소득원의 공·사 역할분담 분석은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노인필요소득과 실제소득수준의 파악이 없이는 그 정확한 정책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즉, 공·사 역할분담 분석은 주어진 노인소득의 구성은 알려주지만, 노인의 소득수준이 필요소득보다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갭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어렵다.

우리 나라 노인들은 공적 노령소득보장제도가 잘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한 생활곤란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았다. 즉, 서구에서는 공적연금을 통하여 노인빈곤이 거의 해소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계층이 빈곤계층의 주요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노인 소득원 구성을 살펴보면,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적이전소득의 커다란 역할비중은 우리의 유교적 '효'문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여타소득원, 특히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더욱 부각된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인 소득중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간에 대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은 공적소득보장을 축소하면 사적이전소득을 통하여 보충될 것이므로 공적소득보장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공적역할축소론의 근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의 역할과 그 의존도가 높으므로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은 그 비중이 작아도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간 공적역할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사적이전소득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게 강조되었고, 노인 소득의 절대수준이 필요소득에 미치지 못하여 많은 노인빈곤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노인의 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이전의 역할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노인 빈곤이 해소되고, 비로소 노인 소득원 구성에서의 공적역할과 사적역할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가능해 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손병돈, 「가족간 소득이전의 결정요인: 부모와 기혼자녀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진재문, 「사회보장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립학교교원연금 수급자와 생활보호 수급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일본 총무청장관관방고령사회대책실,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제4회 국제비교조사결과 보고서, 1997, 중앙법규.
- Axel Borsch-Supan, "Retirement Income: Level, Risk, and Substitution among Income Components," *NBER Working Paper*.
- Bengtsson, T and Fridliziuz, "Public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s an Old-Age Pension System: A Historical Interlude?", in J. Ermisch and N. Ogawa(eds.), *The Family, the Market and the State in Aging Societies*, Clarendon Press, pp.198~215
- Cox, Donald and George Jakubson, "The Connection between Public Transfer and Private Interfamily Transf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57, 1995. pp.129~167.
-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Retirement Income Opportunities in an Aging America: Income Level and Adequacy*, 1982.
- Farns van Dijk, "Private Support and Social Secur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 pp.345~371
- Lee, Rainwater, Martin Rein, and Joseph Schwartz, *Income Packaging in the Welfare State: A Comparative Study of Family Income*, Clarendon Press, 1986.
- Rein, Martin and John Turner, "Work, Family, State and Market: Income Packaging for Older Household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52, 1999. 3. pp.93~106